

(주)포스코건설 (주)동일기술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2019. 11.
공사명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	
검토건명	휴일(야간)작업 승인요청 검토보고(11월 5주차)	

□ 검토목적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의 휴일(야간)작업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작업의 필요성과 휴일(야간) 근무 및 대가지급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정성 검토.

□ 검토근거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음)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휴일작업 현장관리 개선방안(2013.11.14)

□ 검토내용

- ▶ 휴일작업 기간 : 2019. 11.30.(토), 12.01.(일) (2일간)
- ▶ 휴일작업사유
 - 하부 구조물공사 등 본공사의 적기 착공을 통한 연차공사 물량 소화 필요
 - 휴일작업 불가시 월간 약 8일(주2일, 월평균 4주)의 추가 공사일수 발생으로 해당공정 지연발생 우려
- ▶ 휴일 및 야간작업 공종

1. 인원투입 현황

일자	번호	계	작업위치	직종 및 인원		작업내용	비고
				직종	인원		
11월30일 (토)	1	5명	R-A P8	반장 목공	1명 4명	기동2단 거푸집 조립	주간
	2	5명	R-A A2	관리 철근공	1명 4명	기초철근 조립	
	3	4명	R-B P4	관리 가시설공	1명 3명	가시설 토류판 설치	
12월01일 (일)	4	5명	R-B P8	관리 목공	1명 4명	기동2단 거푸집 조립	주간
	5	5명	R-A A2	관리 철근공	1명 4명	기초철근 조립	
	6	4명	R-B P4	관리 가시설공	1명 3명	가시설 토류판 설치	

2. 장비투입 현황

일자	번호	계	작업위치	장비명 및 투입대수		작업내용	비고
				장비명	대수		
11월30일 (토)	1	2대	R-A A2	카고크레인	1대	기초철근 조립	주간
	2	2대	R-B P4	B/H0.2 B/H0.6	1대 1대	가시설 토류판 설치	
12월01일 (일)	3	2대	R-A A2	카고크레인	1대	기초철근 조립	
	4	2대	R-B P4	B/H0.2 B/H0.6	1대 1대	가시설 토류판 설치	

□ 휴일(야간)작업 및 근무계획

- ▶ 휴일(야간)작업 : 국경일, 주말 및 야간, 평일(야간)
 -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작업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업무 발생
- ▶ 휴일(야간)작업계획 : 불임자료
- ▶ 휴일 및 야간작업 일정 및 공정은 우천 또는 현장여건에 의거 변경가능
- ▶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 직원은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계획 조정
 - 단, 협력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자로 주68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휴일(야간)근무 감리대가 지급

- ▶ 휴일(야간)비용은 작업시행 귀책사유에 따라 지급
 - (본부장 방침 토목부-3059, 2010.03.08)
 - 시공사 귀책 :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휴일근무 대가 지급

□ 검토의견

「월드컵대교~서부간선 직결램프 설치공사」의 2019년 11월 5주차[12월30(토), 12월01(일) 2일간] 휴일작업사항은 기초철근 조립, 가시설 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근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사 직원은 주당 52시간, 협력업체 근로자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업의 연속성, 1차공사의 적기준공, 작업기간의 단축을 통한 공정만회를 위해 안전, 품질,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평일과 같이 동일하게 현장을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검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김 창 욱(인)

